

『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8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8월 30일

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김 인 종

나. 제안이유

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촉진  
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난립된 개별 농산물 상표를  
통합할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집중 육성하기  
위하여 상표 사용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  
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(안 제3조)

- 농특산물 품목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규정(안 제9조)
-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상표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상표사용 심사 및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상표의 사후관리 및 상표사용권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및 제16조)
- 상표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 및 제18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7조, 제17조, 제27조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, 상표 사용 품목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품질전문관리원을 두며
  - 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사후관리 및 육성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

-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상표의 가치 상승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다만, 본 조례안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【별표 1】의 “구미별미”를 어감상 別米(쌀)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 론    요    지 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 사    결    과 : 수정가결